

#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18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9.

발의자 : 박정 · 김종민 · 전현희  
윤후덕 · 강창일 · 박경미  
신경민 · 이훈 · 박찬대  
김영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,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%인 99개이고,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.7%인 38개에 불과한 상황임.

이에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·유지·보관·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).

##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·유지·보관·관리하는 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8. (생략)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·유지·보관·관리하는 사업</u></p> <p><u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